집에서도 마스크·수시 환기…화장실은 시간차 사용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확진자 생활'

가족 등 동거인과 식사 따로
당분간 일회용기 사용도 권장
인후통 심할 땐 따뜻한 물 도움

격리해제 이후 재감염 가능성도
3일~일주일 밀접 접촉 자제해야

광주·전남지역민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확진 이후의 생활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29일 자정 기준 광주·전남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67만명을 돌파했다. 확진 후 격리해제를 한 광주·전남 지역민도 총 60만명을 훌쩍 넘기면서 지역민의 20%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격리에서 해제되고 있다.

정부가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이른바 '셀프 재택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가족간 감염이 늘어나는데다 재택치료가 대다수를 이루면서 확진자의 재택치료시 동거 가족들의 대응방법, 격리해제 후 활동 시기 여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광주시 북구에서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주부 A(43)씨는 "집에 화장실이 하나 뿐이라 확진자와 나머지 가족의 동선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아이들과 나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일지 몰라 피난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전파력 등을 고려, 가정내의 릴레이 감염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족중 한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음성이 나온 가족이 있더라도 생활공간을 당장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이미 가족중 한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면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감안하면 나머지 가족들도 이미 잠복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결국 생활공간을 옮기면서 오히려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족들은 함께 지내되 일상 공간을 철저히 분리할 것을 당부한다. 먼저 수면공간과 식사공간, 화장실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고, 불가능할 경우 충분한 시간 차이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화장실을 함께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씻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변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리는 게 좋다. 확진자는 식사할 때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가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정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확진자 가족과의 대화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기침과 인후통이 심할 경우에는 꿀 등을 탄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격리해제·완치된 이후의 재감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현재 국내에선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함께 유행 중인데, 세계보건기구(WHO)에 오미크론 감염 이후 스텔스 오미크론에 다시 감영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완치 후에는 다시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 후 완치되면 한동안 항체량이 많아 당분간은 안전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비확진자와 같아진다고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코로나에 걸리고 격리해제(7일)가 됐더라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동일한 의견이다.

대부분의 경우 7일 이내 바이러스 전파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격리해제 후, 마스크를 쓰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등교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추가로 3~7일은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격리 해제 후 기침이 계속되고 가슴통증이 느껴지면 병원을 찾아 폐렴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사람마다 면연력 차이가 커 바이러스 배출량이 다르다는 점에서 결국 확진자 본인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자가격리자 생활 수칙 〈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29일, 광주 북구 상시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광주기독병원, 코로나 후유증 치료 클리닉 개소

회복기 병동 입원 치료도 가능
각 진료과별 협진도 진행키로

광주기독병원이 29일 '코로나19' 환자가 격리해제된 이후 겪는 후유증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한 '코로나 후유증 치료 클리닉'을 개소,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 〈사진〉

코로나 확산과 확진자 격리해제 이후 다양한 후유증들이 보고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다,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기독병원 코로나 후유증 치료 클리닉은 격리해제 후에도 지속되는 이상 신체증상, 포스트 코로나 컨디션, 롱 코비드 증후군, 코로나 확진에 따른 건강 염려증 외에도 다양한 증상에 대한 진료와 함께 코로나 회복기 병동 입원 치료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의 의료진이 진료에 참여하고 각 진료과별로 전문질환 치료를 위한 협진도 진행한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광주기독병원 코로나 후유증 치료 클리닉은 기존 후유증 관련 내원 환자 자료와 국내외 임상데이터를 근거로 한 통합 프로토콜과 검사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협진과 추가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안전속도 5030' 시행 1년도 안돼 바뀌나

인수위 속도 상향 방침에 혼선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속 50㎞인 도시 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광주지역에도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도심권 일부 도로의 속도 제한 완화 방침과 관련, 광주에서도 상향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경찰청 업무보고 이후 '제한속도 5030과 같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용을 주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 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생활도로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중이다.

광주지역에서도 이같은 인수위 입장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 변화가 주목되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사항은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의 경우 도심 전 지역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했지만 광주는 교통량을 감안해 예외지역을 충분히 운영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광주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에 예외를 적용하는 곳은 모두 91곳, 141㎞ 구간으로, 상무대로·임방울대로·무진대로·대남대로 등 광주에서 전남으로 이어지는 도로 등은 60㎞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아병원~백운초교 사거리~백운초교~까치고개 구간은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인데도 시속 60㎞로 운행하다 갑자기 시속 30㎞로 바뀌었다가 다시 50㎞로 조정되는 등 제한속도가 수시로 바뀌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교통에 불편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자치경찰위, 교통사고 사망 줄이기 논의

정책자문단 첫 분과회의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 분야 전문가를 초청, 정책자문단 첫 분과회의를 열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시책을 논의하는 등 전남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구성한 정책자문단 3개 분과 중 교통분과 전문가를 초청, 29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정책자문단 구성 이후 첫 회의로, 올해 위원회 사무국 업무보고에 이어 교통 분야 분과장 선출, 전남경찰청 교통 관련 주제발표 등을 진행했다. 발표 주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현안 시책인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문화 조성 ▲어르신 사망사고 예방 ▲이륜차와 1t 화물차 사고 예방 등 전남형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 등이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역점시책으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387명이던 것이 2021년 256명으로 4년 연속 사망자가 줄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항소심서 집유 선고 석방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29일 업무상 횡령,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 체육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징금을 예납한 점,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받은 5000만원을 돌려준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반영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다른 혐의의 경우 대부분 인정했지만, 업무상 횡령은 부인했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6년~2017년 사이 주류회사 자금 1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도 기소됐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 8390	1	광산구 송도로181번길30, 201동 6층 602호 [도산동,카이스트빌2차아파트] 83.013㎡	아파트	185,000,000 185,000,000	
2021타경 76720	1	북구 평교로45, 202동 6층 603호 59.91㎡	아파트	95,000,000 95,000,000	
2021타경 77020	1	광산구 신창로161번길34, 306동 6층 604호 [신창동,신창3차부영사랑으로] 59.7480㎡	아파트	245,000,000 245,000,000	
2021타경 78177	1	서구 화운로99번길20, 104동 3층 303호 [화정동,화정동고운하이플러스아파트] 71.5777㎡	아파트	382,000,000 382,000,00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1타경 77259	1	동구 의재로33번길34,102동 3층 301호[학동,모아미래도타운[연립주택]]84.9484㎡	다세대	360,000,000 360,000,000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8192	1	광산구 동호동 44 1349㎡[연고미상분묘8기 소재.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49,504,000 49,504,000	지상소재수목포함 매각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1타경 8031	1	서구 천변좌로246번길16, 에이동 1층112호 [양동,양동수산물직판장] 13.338㎡[2021년 12월기준약1,000여만원관리비미납금있는것으로관리사무소진술함]	근린시설	83,000,000 83,000,000	
2021타경 76423	1	북구 서강로89, 5층 501호 [운암동,우진타워] 의원 194.4㎡	근린시설	483,000,000 483,000,000	현황2개호로분리하여학원,사무실로각각이용중
	2	북구 서강로89, 5층 502호 [운암동,우진타워] 의원 102.5㎡	근린시설	255,000,000 255,000,000	현황학원으로이용중
2021타경 77662	1	나주시 배멧1길18, 1동 6층 602호 [빛가람동,센텀빌딩] 198.16㎡	근린시설	226,000,000 226,000,000	공실상태
	2	나주시 배멧1길18, 1동 6층 603호 [빛가람동,센텀빌딩] 255.76㎡	근린시설	292,000,000 292,000,000	공실상태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2. 4. 13.[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4. 20.[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불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3. 3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